

군포시 고시 제2024-108호

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,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8월 22일

군 포 시 장

군포시 정비구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,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